

성과확산형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설명회 Q&A

□ 공고안내서 Q&A 및 사전 질문 답변

[Q1]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보유기술이 국토교통 R&D에서 개발한 기술이어야 하나요?

[A1] 민간기업이 보유한 국토교통 관련 분야 기술이면 신청 가능합니다.
국내 출연연구기관, 대학, 학·협회 등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가 가능합니다.

[Q2]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현재 개발중인 기술로도 참여가 가능한가요?

[A2] 본 사업은 해외 현지 실증을 통한 사업화를 앞둔 기술을 대상으로 하며, 기술성숙도(TRL) 기준 7~9단계(실증-실용화-상용화)의 기술을 권장합니다.
기술성숙도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면 도움이 됩니다.

[Q3] 반드시 기술이전 받은 기술이어야 하나요?

[A3] 국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면 신청 가능하고 반드시 기술이전 받지 않아도 신청 가능합니다. 공고안내서 3쪽의 기술이전 관련 문구는 기술이전 받은 이후 기간(1년 이내)을 명시하기 위해 작성했습니다.

[Q4] 해외기관이 컨소시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? 해외기관의 역할과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?

[A4] 해외기관은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함께 현지 맞춤형 기술개발과 실증 대상지 제공, 현지 사업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컨소시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(공고안내서 p.3 용어 정의 참조).
해외기관의 요건(해외기관의 타당성·신뢰성, 구체적 협력방안 등)은 선정평가 항목에 반영하여 평가하며,
신청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해외기관 간 체결한 사업참여의향서(Letter of Intent, LOI)나 양해각서(Memorandum of Understanding, MOU), 구매의향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

[Q5] 현재 상대국 참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'꼭' 필요하나요?
해외기관과의 MOU, LOI는 반드시 '주관'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나요?

[A5] 상대국 참여의사 확인서류는 반드시 제출이 필요하고, 서류에는 본 사업에 주관기관과 협력을 원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.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함께 공동연구발기관을 포함하셔도 됩니다.

[Q6] 본 사업과 관련해서 실시했던 사전 수요조사에 참여하였는데 제출한 기술이 공고에 반영되거나 선정평가지 별도 가점이 있나요?

[A6] 사전 수요조사는 국토교통기술의 해외 진출 가능 기술 보유현황, 사업화 계획 등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, 접수된 기술이 공고에 반영되거나 선정평가지 별도 가점이 제공되지 않습니다.

[Q7] 2023년에도 공고가 있던데 새로운 공고인가요? 아니면 이어서 난 공고인지? 2023년에는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별첨 서류로 제출했었는데 이번에는 연구개발계획서만 제출하면 되나요?

[A7] 금번 공고는 새롭게 난 공고이고 연구개발계획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. 타당성조사 보고서는 별도로 제출받지 않습니다.

[Q8] 현지 실증계획에 실증대상지가 확정되지 않아도 되나요?

[A8] 실증계획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실증대상 후보지를 제시해야 합니다. 실증계획에는 실증범위, 실증 후보지, 실증기술 내용, 추진전략, 실증 시나리오 및 실행방안, 추진일정, 리스크 관리, 실증 후 운영 관리, 해외기관과의 협력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
[Q9] 국내에는 실증을 수행하고 해외 현지에는 인증만 받는 내용으로 제안 해도 되나요?

[A9] 실증은 해외 현지에서 수행하셔야 합니다.

[Q9]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와 관련하여 본 과제가 4책 6공에 해당하나요?

[A9] 본 공고 과제는 해외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가 아니어서 4책 6공에 해당하지 않고 3책 5공을 적용합니다.

- [Q10] 해외기관의 연구개발비를 국제공동연구개발비 항목으로 편성 가능한가요?
- [A10] 본 공고 과제는 해외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가 아니어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가 아닌 **연구활동비나 위탁연구개발비**에 해외기관의 예산을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.
- [Q11] 국제 R&D 과제 컨소시엄 형성을 위한 해외 국가 매칭 및 네트워킹 이벤트가 있나요?
- [A11] 진흥원이 주관하는 별도의 국가매칭 및 네트워킹 행사는 없습니다.
- [Q12] 2단계 공동연구기관이 1단계 구성과 동일해야 하나요?
- [Q12] 단계별 연구개발기관을 다르게 구성하실 수 있으나 과제 수행의 연속성을 위해 가급적이면 동일하게 구성해주시길 권장합니다.
- [Q13] 해외협력기관의 수는 상관이 없나요?
- [A13] 성과확산형 과제의 경우 해외협력기관 수의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. 과제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게 구성해주시면 됩니다.
- [Q14] 상대국 수요기관의 용역 참여가 가능한가요? 해외기관을 공동연구기관의 용역기관으로 할 수 있나요?
- [A14] 수요기관도 역할이 분명하고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.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을 둘 수 없습니다.
- [Q15] 해외기관의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를 위한 계약방식은 어떻게 되나요? 예산 규모에 제한은 없나요? 달러/원화 중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?
- [A15] 국토부(KAIA)-주관연구개발기관-공동연구개발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해외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. 예산은 직접비의 40%까지 편성이 가능한데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실증 비용이 과소하지 않게 적절한 비용으로 편성하셔야 합니다. 달러/원화는 상관없지만 환율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원화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
[Q16] 연구개발기관 컨소 구성 시, 대표자가 동일한 별개의 기관(민간기업) 2개가 동시에 참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. 참여 역할은 상이하며, 1개 기업은 개인사업자, 1개 기업은 법인입니다.

[A16] 대표자가 동일한 별개의 기관은 연구책임자가 상이할 경우 참여가 가능합니다.

[Q17]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비용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?

[A17] 사업타당성 검토는 별도 용역이 아닌 연구개발내용에 포함하고 해당 내용을 담당하는 기관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해야 합니다.

[Q18] 선정평가지 주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?

[A18] 보유기술의 해외 적용·확산 가능성, 해외기관의 신뢰성·협력 정도, 실증·사업화 계획의 구체성, 국내기업의 경영상태·성장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(공고안내서 pp.19-20).

[Q19] 단계평가지 주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?

[A19] 보유기술의 해외 적용 기술적·경제적·정책적 타당성, 현지 수요 예측 및 여건 분석의 적절성, 기술개발 및 현지 실증 계획의 구체성, 해외기관의 신뢰성·사업화 의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(공고안내서 p.46).

[Q20] 과제 진행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?

[Q20] 과제 접수 2.9(월) 18:00 → 서류 검토 및 보완 2월말 → 1차 서면평가 3월초 → 2차 발표평가 3월 중순 → 평가결과 통보 및 서류 보완 3월 말 → 협약 체결 4월 → 1단계 평가 11월 → 2단계 과제 수행 '27년~'28년 → 2단계 평가 '28.11월 → 3단계 과제 수행 ~'29.12월 순으로 진행합니다. 일정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[Q21] 성과확산형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과 협력거점형 국토교통 국제협력 사업의 올해 공고에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?

[A21] 제안하시는 기술이 동일한 기술이 아닌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
[Q22] 신진연구자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?

[A22] 제안하시는 기술이 동일한 기술이 아닌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
□ 설명회 질의 답변

[Q1] 공동연구기관이 정출연인 경우, 전체 정출금에 대해 기업부담금은 주관기관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 맞지요?

[A1]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경우,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당기업의 부담금만 매칭하시면 됩니다(기업규모별 부담금 비율은 공고 안내서 IV.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p.24 참조).

[Q2] 협력 해외기관이 반드시 하나의 국가 내의 기관이 되어야 하는지, 아니면 다자협력 기구(예. UN 또는 국제 표준화 기구)도 가능한지요?

[A2] 다자협력 기구도 해외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지만, 사업의 취지상 해외 기관은 **국내 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소속된 기관**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.

[Q3] 제안하고자 하는 기술을 개발하려면 2개 기업의 참여가 필요합니다. 이런 경우 기업 2+ 출연연1의 형태로 컨소시엄 구성 가능한가요?

[A3] **2개 이상의 기업으로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합니다.** 다만 개발기술에 가장 비중이 높은 **기업 하나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담당**해야 합니다.

[Q4] 단계형 과제이고 2단계 선정이 미정인데, 신규인력 채용이 필수적인가요?

[A4] 1단계 평가가 관문형 평가이기 때문에 **1단계 착수시점부터 신규인력 채용이 필수는 아니고**, 2단계 과제에 선정되시는 경우 2단계 착수시점부터 청년 신규인력을 반드시 채용해주셔야 합니다.

[Q5] 해외 실증을 위해 현지에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, 연구개발장비 심의서를 제출하면 되나요?

[A5] **보유장비의 단순 설치인 경우** 연구개발장비 심의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.

[Q6] 위탁연구기관이 아니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이 SW개발 외주 용역을 연구개발비로 수행할 수 있는지요?

[A6] **주관연구개발기관의 용역을 같은 기관이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.** 용역 내용을 연구개발내용에 포함하셔서 연구를 수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.

[Q7] 관문형 과제에서 중간에 탈락하면 NTIS에 연구과제 이력에 어떻게 남는지? 중단이나 실패로 되는지 아니면 성공 판정을 받게 되는지?

[A7] 관문형 평가에서 탈락할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/보통/미흡 등의 평가등급이 부여됩니다. 시스템 상의 상태는 “**단계평가 결과에 의한 지원중단**”으로 기록됩니다.

[Q8] 위탁 해외기관이 1군데 이상이어도 가능할지 여쭙습니다

[A8] 위탁 해외기관은 1개 이상이어도 가능합니다.

[Q9] 수요처 중심의 컨소시엄 구성을 권장한다고 했는데, 해외기관 유형이 해외실증지원기관일 때도 컨소시엄 구성을 해야 하나요?

[A9] 해외기관이 **해외실증지원기관일 때에도 컨소시엄에 포함하여 구성**하셔야 합니다. 해외실증지원기관도 **사업 참여의향서(LOI, MOU 등)**를 반드시 **제출**하셔야 합니다.

(LOI 양식은 서식 참고8 참조, 레터 내용에 국내 주관기관(기관명 포함)과 협력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, 위탁연구개발책임자 소속기관의 대표(총장) 혹은 소속부서의 부서장(학과장, 대학장, 연구소장) 등 위탁연구개발책임자의 소속기관/부서의 상위직급자의 서명만 인정(위탁연구개발과제 책임자 당사자는 서명 불가))

[Q10] 시장 조사시 외주계약처리가 불가하나요? 꼭 공동연구기관으로 올려야 하나요?

[A10]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위탁연구개발기관도 시장 조사 연구개발 내용 수행이 가능하지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.

[Q11] 실증에 대한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?

[A11] 현지 실증에 대한 평가는 **현지화 개발기술의 기존 기술 대비 개선도, 실증 분석결과, 기술개선 반영 정도, 해외 사업화 기여도**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, **2단계 평가전 전문가 현장방문** 등을 통해 **현지 실증 상황을 점검하고 해외기관의 만족도를 파악**할 예정입니다.

[Q12] 해외위탁기관의 주소재지가 아닌 지역에서 실증을 수행해도 되나요?

[A12] 해외기관은 국내 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소속된 기관을 추천드리고 해외국가가 동일하다면 실증은 다른 지역에서 수행하실 수도 있습니다.
(예. 베트남 하노이 소재 해외위탁기관 → 베트남 내 하노이 등 지역에서 실증 가능)

[Q13] 해외협력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LOI 본문에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명칭이 반드시 언급되어야 하나요? 참고로 LOI 양식 상에 수신은 KAIA이고, 제안과제 명칭은 포함되어 있습니다.

[A13]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명칭과 협력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
[Q14] 해외기관을 한 국가에 3곳을 생각하고 있습니다⁽¹⁾ 해외협력기관 : 대학, ⁽²⁾ 해외실증지원기관 : 기업, ⁽³⁾ 해외수요기관 : 정부기관(원도급사)). 이 경우 LOI를 위탁연구비를 받지 않는 모든 기관에게 다 받아야 하는건가요?

그리고 사전에 협력기관과 체결한 MOU도 활용가능한가요? 아니면 꼭 해당과제 양식으로 다시 받아야 하나요?

[A14] 본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해외기관은 LOI 등 참여의향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.

사전에 체결한 MOU도 가능한데 협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체결된 지 오래된 협약(5년 이상)은 LOI를 다시 받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[Q15] 문서24 전자공문 제출도 2.9까지인가요?

[A15] 문서24 전자공문도 시스템시간 기준 '26.2.9(월) 18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.

[Q16] 3단계 상용화/사업화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여쭙 봅니다.

[A16] 3단계 평가는 본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로, 최종보고서와 함께 사업화 달성 여부(계약전수, 매출액)로 평가합니다.

[Q17] 해외시장 국가가 초기 시장과 확장 시장이 다른 국가일 경우 모든 국가에 대한 시장 분석 및 실증이 필요한 건가요?

[A17] 1단계 연구개발과제 추진시 진출하시려는 모든 국가에 대한 시장 분석 및 기술 적용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.

[Q18] 실증 및 사업화 비용이 부족한데 타 비용을 활용하여도 실적 인정이 가능한지요? 본과제의 사사를 집어넣지 않아도요.

[A18] 사사가 없는 경우 본 연구개발과제 실적 인정이 불가합니다.

[Q19] 해외기관 LOI의 서명 관련하여, 해외대학이면 학교장의 서명이 필요한가요? 또는 학과장/단과대학장/과제 책임자 등으로 대체가 가능할까요?

[A19] LOI는 위탁연구개발책임자 소속기관의 대표(총장) 혹은 소속부서의 부서장(학과장, 대학장, 연구소장) 등 **위탁연구개발책임자의 소속기관/부서의 상위직급자의 서명**만 인정합니다. 위탁연구개발과제 책임자 당사자는 서명이 불가합니다.

[Q20] 가점에서는 주관과 공동기관 등 컨소시엄 모두가 포함되는지요?

[A20] 가점 항목에 따라 주관과 공동기관이 해당하는 항목이 상이합니다. 공고안내서 신청 관련 Q&A(p.37)와 서식4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[Q21] 필수성과지표 중 '사업화·제품화'는 반드시 해외수요국가의 기관에 기술을 판매(혹은 공급)한 계약서만 인정이 되나요?

[A21] **해외수요국가 대상 매출실적을 인정**합니다.

[Q22] 기업신용평가서는 2025년 재무제표가 아직 없으므로 2024년 재무제표 기반으로 받은 평가서면 되나요?

[A22] **2024년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받은 기업신용평가서를 제출**하시면 됩니다.

[Q23]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대학인 경우 주관기관(기업)만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, 표준재무제표 증명 제출하면 될까요?

[A23] **대학도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필수로 제출**해주셔야 합니다. 표준재무제표도 가능하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[Q24] 공공기관과 실질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함께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을 할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어디가 되나요?

[A24] 본 연구개발과제는 **회사(기업)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담당**합니다.